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5호

2026년 제3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0377호, 2024. 3. 19.)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74호, 2023. 12. 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사상구 규칙 제597호, 2023. 11. 30.)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인원	임용직급	임용기간
구보편집원	문화체육과	1명	행정8급 (일반임기제)	임용일로부터 1년 **※ 임용: 26.7.1.자(예정)**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건강증진과	1명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시간)	임용일로부터 2년 **※ 임용: 26.9.1.자(예정)**

※ 계약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실적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사업 계속 시)

3.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주요업무
구보편집원	○ 「사상소식」 발행·배부 업무 전반 - 기사 취재, 편집, 발행, 배부, (예산)지출 등 관련업무 전반, 구보편집위원회 관리 ○ 「모바일·점자·읽어주는 사상소식」 발행 업무 전반 ○ 구정(구청장) 인터뷰 자료 작성 및 지원 ○ 언론보도자료 지원 및 홍보팀 업무 지원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 대상자 상담·등록 관리 ○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기검진 업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66조, 병역법 제76조, 치료감호법 제47조, 부패방지법 제82조, 정치자금법 제57조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임용분야별 자격요건 (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격요건
구보편집원 행정8급 (일반임기제)	▸ **다음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나 법인 등에서 신문 편집 및 제작, 발간 관련 업무 경력
	▸ **우대사항** - 임용예정 직무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 학사학위: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국문학 등 관련 학과 - 일간신문 편집, 취재 실무경력자 및 지방자치단체 구보 편집·발행 경력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격요건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치매안심센터 포함)에서의 노인복지, 보건의료분야 관련 실무경력 ▸ **우대사항:** 운전면허 소지자,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등) 가능한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5. 보수 수준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8급(상당)	62,096천원	44,296천원	-
9급(상당)	54,678천원	-	마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연봉 하한액 책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연봉책정 내부기준 등에 따라 별도 책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 책정(안) ▸ 보수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연봉액	비 고
구보편집원	연봉하한액 기준 ▸ **44,296천원**	8급(상당)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연봉상한액 기준, 근무시간 비례(35/40)하되 업무성격 감안 ▸ **54,678 * 35/40 * 60% = 28,705천원**	9급(상당)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 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5개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개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평정 성적이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

나. 시험 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6.4.29.(수)	'26.5.11.(월) ~'26.5.13.(수)	서류전형	-	-	'26.6.2.(화) ※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공고
		면접시험	'26.6.12.(금) (예정)	사상구청	'26.6.15.(월)(예정)

※ 합격자 발표는 사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하며, 시험일과 합격자 발표일, 임용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 수 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행정과 총무팀(구청 3층)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 총무팀
- 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 ▸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 · 성명 기재**」

8. 제출 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5급(상당) 1만원, 6~7급(상당): 7천원, 8급~9급(상당): 5천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첨부(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로 대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 없을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력서 기재금지)**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로 보완해야 함

  * ❶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❷ 폐업사실증명서 ❸ 4대포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❹ 소득금액증명서
    → ❶, ❷, ❸, ❹ 모두 제출하여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⑩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⑪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원서접수 시 원본을 지참**

9.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증명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차순위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임용시험의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재선발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구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의 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에 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관련: 사상구청 자치행정과 총무팀(051-310-4106)

▸ 직무 관련

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연 락 처
구보편집원	문화체육과	051-310-4072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건강증진과	051-310-3364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붙임】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구보편집원	행정8급(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사상소식」 발행·배부 업무 전반 - 기사 취재, 편집, 발행, 배부, (예산)지출 등 관련업무 전반, 구보편집위원회 관리 ○「모바일·점자·읽어주는 사상소식」 발행 업무 전반 ○ 구정(구청장) 인터뷰 자료 작성 및 지원 ○ 언론보도자료 지원 및 홍보팀 업무 지원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사상소식지(사상 신문) 발행(취재, 편집)에 따른 업무 전반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구보편집원**	
	자격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나 법인 등에서 신문 편집 및 제작, 발간 관련 업무 경력
우대요건		○ 임용예정 직무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국문학 등 관련 학과 ○ 일간신문 편집, 취재 실무 경력자 및 지방자치단체 소식지 편집·발행 경력자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치매안심센터(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증진과(치매안심센터)

주요업무	○ 대상자 상담·등록 관리 ○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기검진 업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노인의 특성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 ○ 치매 관련 상담 및 교육 및 상담·인지강화프로그램에 관한 경력 및 지식 ○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상담 관련 지식 ○ 치매관리를 위한 기획 관련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간호사**	
	자격요건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치매안심센터 포함)에서의 노인복지, 보건의료분야 관련 실무경력
우대요건		○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등) 가능한 자 ○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분야	임용직급	응시자격
		(예시) 행정 8급(일반임기제)	(예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번	제 출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 별지 제2호 서식		
2	이력서 ▸ 별지 제3호 서식		
3	자기소개서 ▸ 별지 제4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제5호 서식		
5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	원본 사본	
6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원본 사본	
7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 보험가입 전체기간)		
8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9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 별지 제7호 서식		
10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자료(면허증, 자격증 등 사본) ① ②		
11	등기우편 접수시 ① 우체국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② 반신용 봉투(등기용 우표 부착, 수신인 란에 성명과 주소 기재)		

※ 응시자는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 란에 "○" 표시하여 주시고,
상기 번호 순서대로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스테플러 편철 금지)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 원서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응시직급)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고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응시자격			
주 소	(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5급(상당) : 1만원 6·7급(상당) : 7천원 8·9급(상당) : 5천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직급)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고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맞추어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응시직급) : 해당되는 사항 기재 예)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3. 응시자격 : 시험공고문을 참고하여 분야별 충족되는 응시자격 요건을 기재
(예,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응시수수료 : 5급(상당) 10,000원, 6~7급(상당) 7,000원, 8~9급(상당) 5,000원

▸ 사상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날인하되, 우편제출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를 응시원서 등과 함께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

이 력 서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성 명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경력(재직) 증명서 첨부 여부
응시분야 관련경력	00광역시(00과)	20 . . .~20 . . .(월)(주 H)	행정7급		
	00기업(00팀)	20 . . .~20 . . .(월)(주 H)	대리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위	00학	0000.00.00.	박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이 력 서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자격사항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취득(예정)일 ·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응시분야 관련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여부 기재: **첨부하였을 경우 ○ 기재, 미첨부 경우 ×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무관한 경력은 기재하지 않음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1일 8시간 주40시간의 경우 **근무기간 작성 예시)** 2018.1.1.~ 2019.12.31.(24월)(주40H)
- 1일 7시간 주35시간의 경우 **근무기간 작성 예시)** 2018.1.1.~ 2019.12.31.(24월)(주35H)

②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 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인정 안내]

※ 주40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됨

예시) 24월 주35시간 근무 → (환산경력)24월*35/40=**21월**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4. 학위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5. 기타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분야 실적 등이 있을 경우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20 . . . 작 성 자: (서명/인)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경력내용 및 업적,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크기 13), 서식 준수, 작성자 서명은 마지막 장 하단에 한번만 서명

【별지 제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20 . . . 작 성 자: (서명/인)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재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크기 13), 서식 준수, 작성자 서명은 마지막 장 하단에 한번만 서명

【별지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검증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2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3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임기제공무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임기제공무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